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3 선고 2022나48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3 선고 2022나4830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가소25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2. 3.

판결선고 2023. 3. 3.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가소25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30.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2007. 4. 9. 1,000만 원, 2007. 4. 1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경 원고를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2012형제22380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고소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은 '원고가
2005. 12. 30. 피고에게 (기존)식대(변제) 및 공사현장의 구내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준다고 속인 후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2. 9. 28. 원고와 피고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과 위
제1의 나.항에 기재한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 6. C의 입회 하에 기존의 돈 거래 및 형사고소 문제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600만 원,
지급기일 2012. 10. 19.인 약속어음과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고소에 의한 수사 당시 원고와 피고를 대질신문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피고가 '2005. 12. 30. 빌려주고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은 채권은 원고로부터 전부 변제받았으나,

마산 함바집과 관련하여 2005. 4.경 차용증 없이 별도로 2,0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은 그 중 400만 원만 변제받음으로써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원고도 비록 돈을 빌린 동기에 대해서는 다투나 '1,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와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수사결과 분쟁의 대상이 된 미변제 채권의 발생시기가 '2005. 4.경'이므로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2. 10. 23. 원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7219호로 소송(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8. 6. 확정되었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가 모친이 사망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자 변제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착오와 강박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소송에 의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56953호 대여금(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9.과 2007. 4. 18.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소송(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소장 부분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5. 1. 1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소송 제기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이 법원 2020고단3024) 2021. 1. 8.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법원 2021노70)에서 2021. 5.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21도6859)에서 2021. 8. 10.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해서 이 법원에 2022재고단9호로 재심 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2022. 2. 16. 기각 되었다).

자. 이에 이 사건 제2소송의 항소심(이 법원 2021나40994)은 2021. 9. 10. 원고가 위 대여주장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21다280965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5 내지 10, 27 내지 30, 35, 38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 D와 E에게 함바식당 건으로 2,500만 원을 주었는데 D와 E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에게는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까지 포함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과거에 피고로부터 빌렸다가 변제하였던 이 사건 2,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고와 경찰 등의 합의 중용에 의해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1,6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소송에 의한 판결은 부당하나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이 사건 2,000만 원을 부당이득 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2. 30.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0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2,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이 사건 합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소송에 의한 판결이 부당하게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소송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2,000만 원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소송에 의한 판결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가 착오·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재심 등에 의해 결론이 바뀌지도 않았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소송에 의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2,000만 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우인성, 판사 박성규